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3. 11. 21.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3년 11월 17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100회 제1차 위원회(2003년 11월 18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홍성배)

- 가. 개정이유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종료(2002. 12. 31.)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제7조)
    -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이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과세형평성 제고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안 제9조)
    - 전용면적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여 소형 국민임대주택 확대공급을 통한 경기안정 도모
  -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보완 (안 제10조)
    -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
  -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폐지(현행 제22조)
    - 2002 월드컵과 관련 한시적으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
  -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다.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세제 13430-1218(2003. 10. 17.)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박창수)

조례(안) 7조에서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을 보완하여 상업용 부동산도 면제해 줌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기하였고,  
 조례(안) 9조에서 국민임대주택도 영구임대주택과 같은 수준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소형 임대주택의 확충을 지원하였으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은 IMF 이후 주택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현재는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므로 조례(안) 10조에서 세제지원기간을 단축 조정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관련 한시 조례인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도 시한 만료됨으로써 폐지하는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기간 연장, 수정 보완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의 내용과 시기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73
----------	----

제출년월일 : 2003. 11. 21.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2003. 12. 31.) 종료에 대비하여 행정자치부 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그 기한을 연장하고 감면조례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문화재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제7조)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이외에 상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과세형평성 제고
- 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규정 보완(안 제9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여 소형 국민임대주택 확대공급을 통한 경기안정 도모
- 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 보완 (안 제10조)  
건축 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
- 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폐지(현행 제22조)  
2002 월드컵과 관련 한시적으로 시행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2002년 12월 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되었기에 이와 관련된 재산세와 사업소세 감면규정을 삭제
- 마. 감면조례 적용시한 연장(안 부칙 제2조)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한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9조 및 구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 세제 13430-1218(2003. 10. 17.)
- 나. 예산조치 : 비예산
- 다.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라. 입법예고 : 2003. 10. 25. ~ 11. 3. 예고결과 의견 없음
- 마.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의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사회복지 지원을 위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유족과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 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된 평생교육시설
2. 한국노동교육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교육원
3. 건설교통부의 운수연수원 설립계획에 따라 설립된 운수연수원
4.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행정관청의 인·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평생교육시설
5.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6.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7.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

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 ②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장 대중교통 지원을 위한 감면

제8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

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2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용 부동산을 임대주택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이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한다.

제10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납세의무

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한다.

제11조(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30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동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지상건축물(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제12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으로써 취락지구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3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공단을 포함한다.)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 중 민간 출자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 출자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

1.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을 경감한다.

제16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7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서울특별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18조(영등포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9조(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20조(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감면)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가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5조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기념탑과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재산할)를 면제하고, 그 사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에 대하여는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면제한다.

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22조(서울특별시 전직 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경호실법시행령 제2조의2제1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 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3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대상으로 한다.

제6장 보 칙

제23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4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제2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 (안)
<p>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p> <p>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4. (생략)</p> <p>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박물관 및 미술관</u></p> <p>6.~7. (생략)</p> <p>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p> <p>1.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와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p> <p>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장에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p> <p>3. 문화재보호법 및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p> <p>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 및 임대</p>	<p>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u>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u> ……</p> <p>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4. (현행과 같음)</p> <p>5. <u>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u></p> <p>6.~7. (현행과 같음)</p> <p>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p> <p>1. …… …………… ……………<u>부동산</u></p> <p>2. ……<u>건축물</u> …… …………… ……………<u>부동산</u></p> <p>3. ……</p> <p>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 ……………<u>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u> ……</p>



현행	개정 (안)
<p>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15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                  .....                  .....                  .....                  .....                  .....</p>
<p>제18조(영등포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7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에 의한 감면은 사업개시일</li> <li>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에 의한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li> </ol>	<p>제18조(영등포구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                  .....                  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이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li> <li>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동조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li> </ol>

현행	개정 (안)
<p>제22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lt; 삭제 &gt;</p>

현행	개정 (안)
<p>제22조(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서울특별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통보된 건축물(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연도 재산세와 당해 건축물 내에 소재하는 사업소에 대한 당해연도 사업소세를 각각 50% 경감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 5년 이내에 재정비대상이 되어 통보된 경우에는 경감된 재산세와 사업소세를 추징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정비가 완료·통보된 이후에 감면하되, 정비완료 당해연도에 이미 납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경감세액을 환부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당해연도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경감세액은 각각 납세의무자별로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p>	<p>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비용에 해당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p> <p>&lt; 삭제 &gt;</p>